북구체육회 가입탈퇴 규정

제정 2018.02.27.
개정 2019.02.25.
개정 2020.05.29.
개정 2021.11.08.
개정 2023.02.03.
전부개정 2024.07.1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6조(조직) 및 제10조(가입 및 탈퇴) 등 제10조의 2(회원종목단체의 강등·제명)등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 가입 및 탈퇴 등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1.11.08.><개정 2024.07.12.>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가입"은 체육회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21.11.08.><개정 2023.02.03.><개정 2024.07.12.>
2. "탈퇴"는 회원종목단체가 회원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23.02.03.><개정 2024.07.12.>
3. "등급"은 정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구분을 말한다.<신설 2024.07.12.>
4. "승격"은 준회원 단체가 정회원단체로 등급이 조정되거나, 인정단체가 준회원단체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.<신설 2024.07.12.>
5. "강등"은 정회원단체가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준회원단체가 인정단체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.<신설 2024.07.12.>
6. "제명"은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.
<신설 2024.07.12.>
7. "올림픽대회 종목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"은 가입 및 등급 심의 당시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.<개정/호 옮김 2024.07.12.>

제3조(가입요건) ①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개정 2024.07.12.>

1. 광주광역시북구를 대표하는 해당종목 단체일 것<개정 2024.07.12.>
2. 종목이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
3. 광주광역시북구를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
<개정 2024.07.12.>
4. 회원종목단체(정회원, 준회원, 인정단체)는 가입요건에 맞게 구체육회에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종목의 특성(민속, 계절종목 등 활동장소, 시설 등의 제한요인으로 광역시 규모의 분포가 어려운 종목 등)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.<신설

2024.07.12.>

① 정회원단체는 7개 이상의 클럽의 조직되어 있으며, 있어야 하며 클럽 회원수는 10명이상 주소지는 50%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준회원단체는 5개 이상의 클럽이 조직되어 있어야 하며 클럽 회원수는 10명이상 주소지는 50%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인정단체는 3개 이상의 클럽이 조직되어 있어야 하며 클럽 회원수는 10명이상 주소지는 50%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5. 제4호의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2년에 1회 이상일 것
<신설 2024.07.12.>

6.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<호 옮김 2024.07.12.>

7. 체육회의 “정관” 및 “종목단체규정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<호 옮김 2024.07.12.>

8.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가 인정하는 국제경기연맹(IF)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(OCA)가 인정하는 아시아경기연맹(AF)에 가입한 단체일 것. 다만, 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.<개정 2024.07.12.>

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는 종목단체의 최초 등급은 인정단체가 된다.<개정 2024.07.12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올림픽대회, 아시아경기대회, 전국체육대회,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은 1개 이상의 구종목단체가 가입되어 있고, 대회출전 요건 등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준회원단체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24.07.12.>

④ 체육회는 가입 심의대상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회원종목단체 가입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.<개정 2024.07.12.>

⑤ 준회원단체 이상의 등급이 확정된 회원종목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<신설 2024.07.12.>

제4조(가입 심의절차 등)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제경기연맹 또는 아시아경기연맹이 존재하지 않는 종목단체는 제1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.<개정 2024.07.12.>

1. 가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2. 단체 소개서(연혁, 종목설명, 활동개요, 조직 등)
3. 임원 명단(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)
4. 단체의 모든 규약<호 옮김 2024.07.12.>
5.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<호 옮김 2024.07.12.>
6.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<호 옮김 2024.07.12.>
7. 회원종목단체의 선수 및 동호인 등록 현황(스포츠클럽 포함)
<호 옮김/개정2024.07.12.>

8. 구 종목단체 가입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<개정 17.11.09.>
<호 옮김/개정 2024.07.12.>
9.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<호 옮김 2024.07.12.>
10.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<호 옮김 2024.07.12.>
11. 전년도 예·결산서 및 해당년도 예산서<호 옮김/개정 2024.07.12.>
12.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(IF) 및 아시아경기연맹(AF) 가입 관련 서류
<개정 2024.07.12.>
13. 해당 단체의 중앙종목단체 현황 및 전국종목단체 등록현황 등에 관한 참고자료
14. 체육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및 현황 등<신설 2024.07.12.>

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체육회는 다음해 3월까지 심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에 국가대표 선수 파견 및 훈련을 위한 경우에는 심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신설 2024.07.12.>

③ 가입·등급심의위원회는 가입요건, 체육회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, 가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관 제6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.<신설 2024.07.12.>

제5조(등급심의) ① 체육회는 정회원단체, 준회원단체, 인정단체의 등급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심의한다. 다만, 당해 연도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는 예외로 한다.<개정 2024.07.12.>

②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심의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.<이하 호(목) 신설 2024.07.12.>

1. 회원종목단체 요구: 제4조제1항의 서류 및 해당클럽 가입 현황
회원종목단체 등급 현황, 대회 개최 현황
2. 기타 체육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요건

제6조(승격) ①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는 해당 등급 승인 일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승격 심의 대상이 된다. 다만, 회원단체가 승격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07.12.>

② 회원종목단체가 승격을 위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가입 요건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구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 수와 등급을 충족하여야 한다.<이하 호(목) 신설 2024.07.12.>

1. 인정단체가 준회원단체로 승격할 경우: 5개 이상 클럽 가입. 다만 올림픽, 아시아경기대회, 전국체육대회,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의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2. 준회원단체가 정회원단체로 승격할 경우: 7개 이상 클럽 가입. 다만 올림픽, 아시안게임, 전국체육대회,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의 경우에는 다음 목에 의한다.

가. 올림픽대회, 아시아경기대회 정식종목: 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나. 전국체육대회,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정식 종목: 2개 이상 회원종목단체 가입

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승격 대상에서 제외한다.<이하 호(목) 신설 2024.07.12.>

1. 종목단체규정 제40조의2에 따른 직전 평가 결과가 최저등급인 경우
2. 회원종목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한 경우
3. 관리단체 해제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④ 제1항에 따른 승격 희망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이하 호(목) 신설 2024.07.12.>

1. 승격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
2. 임원 명단
3. 단체의 모든 규약
4. 회원종목단체의 선수 및 동호인 등록 현황(스포츠클럽 포함)
5. 체육회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클럽 현황
6. 대회 개최 및 국제 대회 입상 실적
7.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 현황(2년에 1회 이상일 것)
8. 체육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및 현황 등

⑤ 가입·등급심의위원회는 승격요건, 체육회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, 승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이하 호(목) 신설 2024.07.12.>

1. 준회원단체로의 승격: 이사회의 의결
2. 정회원단체로의 승격: 총회 의결

제7조(강등 및 제명)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종목단체에 대해서는 정관 제10조의2에 따라 강등 또는 제명 할 수 있다.
<항 옮김/개정 2024.07.12.>

1. 회원종목단체의 가입요건 또는 승격요건을 상실한 경우<개정 23.12.29.>
2. 정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<개정 2024.07.12.>
3. 임원 간의 분쟁, 재정악화,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회원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<개정 2024.07.12.>

4. 회원종목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스포츠비리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한 경우<개정 2024.07.12.>
5. 국회, 감사원, 문화체육관광부 등 외부 감사와 체육회의 감사의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<신설 2024.07.12.>

② 가입·등급심의위원회는 강등 또는 제명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강등 또는 제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관 제10조의2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.
<이하 호(목) 신설 2024.07.12.>
1.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
2. 강등 또는 제명 시 문제점
3. 개선 가능성
4. 제1항제5호에 따른 처분 조치 이행 가능여부

③ 종목단체규정 제40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 최저등급인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강등한다.<신설 2024.07.12.>

④ 체육회 정관 제9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한다.<개정 2024.07.12.>

제8조(탈퇴) ① 회원종목단체가 정관 제10조제2항에 따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탈퇴한다. <개정 2024.07.12.>

②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.
<개정 2024.07.12.>

제9조(가입·등급심의위원회) ① 체육회는 가입, 승격, 강등, 제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가입 · 등급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구성하여야 한다.
<신설 2024.07.12.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이하 호(목) 신설 2024.07.12.>
1. 제4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
2.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승격, 강등 및 제명에 관한 사항
3. 기타 체육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.<이하 호(목) 신설 2024.07.12.>
1.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및 해당 분야와 관련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회장이 위촉하되, 체육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2.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.

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 총회 일을 기준으로 하며,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.<신설 2024.07.12.>

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24.07.12.>

제10조(동체육회의 가입과 등급) ①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동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.<이하 호(목) 신설 2024.07.12.>

1. 가입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
2. 단체 소개서(연혁, 조직현황, 활동개요 등)
3. 임원 명단(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)
4. 단체의 모든 규약
5.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허가증
6. 법인 등기부등본
7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8. 법인설립 총회 회의록

② 동체육회는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본다.

③ 동체육회는 등급심의를 제외한다.<신설 2024.07.12.>

제11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을 개정할 때 광주광역시북구청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북구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신설 2024.07.12.>

제12조(동체육회 규정의 적용) 동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에 한정하여 가입 · 탈퇴규정의 가입요건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.<신설 2024.07.12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① (구)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(구)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 대상인 경우 해당 종목단체가 통합하였을 때 회원종목단체가 된다. 다만, 통합 대상 단체가 2016년 9월 30일 이후에도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되며, 통합을 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회원종목단체로 본다.<개정 2021.11.08.>

② (구)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(구)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회원등급은 다음 각 호과 같다.

1. (구)광주광역시체육회 정 가맹단체와 (구)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정회원단체가 통

합한 경우, 정회원단체가 된다.

2. (구)광주광역시체육회 정 가맹단체와 (구)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의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가 통합한 경우, 정회원단체가 된다.

3. (구)광주광역시체육회 준 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와 (구)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정회원단체가 통합한 경우, 정회원단체가 된다.

4. (구)광주광역시체육회 인정단체와 (구)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인정단체가 통합한 경우, 인정단체가 된다.

③ (구)광주광역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(구)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 대상이 아닌 경우,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원등급은 다음 각 호과 같다.

1. (구)광주광역시체육회 정 가맹단체와 (구)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가 된다.

2. (구)광주광역시체육회 준 가맹단체와 (구)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의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가 된다.

3. (구)광주광역시체육회 인정단체와 (구)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인정단체는 인정단체가 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, (구)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(구)국민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 중 통합 과정에서 통합대상으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된 국민생활체육전국럭비연합회, 국민생활체육 전국소프트볼연합회, 국민생활체육전국인라인·아이스하키연합회, 국민생활체육 전국요트연합회는 회원단체 및 등록단체가 되지 못한다. 다만, 대한민국항공회, 대한족구협회 및 국민생활체육 전국공수도연합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가 된다. 이에 따라 위와 관련된 광주광역시북구 종목단체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적절한 단체로 볼 수 있다.

제3조(등급심의 등) ① 체육회는 매년 회원단체의 등급 심의를 하여야 하며, 최초의 등급 심의는 이 규정이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제4조제1항제4호,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1항제4호는 제1항에 따른 등급 심의 시 적용하지 않는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제4조제1항제5호,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.

가.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: 10분의 4 이상

나.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: 10분의 7 이상

다.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: 10분의 9 이상

라.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: 10분의 10 <개정 20.05.29.>

부 칙(2020. 05. 29.)

제１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２조(등급심의 등) ①가입탈퇴규정 부칙(2016.03.21.)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1항제5호,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.

가.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: 10분의 4 이상

나.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: 10분의 7 이상

다.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: 10분의 9 이상

라.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: 10분의 10

③ 회원단체의 등급 심의에서 제4조제1항제6호와 제7호, 제5조제1항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요건은 첫 번째 등급심의시 적용하지 않는다.

부 칙(2021.11. 08.)

제１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02. 03.)

제１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7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２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제6조제2항에 해당하여 강등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간 강등을 유예한다.

② 이 규정 제7조제3항의 평가 결과의 반영은 개정안 시행일 연도 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<table>
<tr><td>접수일</td><td></td><td colspan="4" rowspan="2">회원종목단체 가입 신청서</td></tr>
<tr><td>접수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신청인
(대표자)</td><td>①단체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②연락처</td><td></td></tr>
<tr><td>③주소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④성명
(한자)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⑤생년월일</td><td></td></tr>
<tr><td>⑥현 주소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⑦설립 연월일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⑧설립목적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⑨회원 및 지회 현황</td><td>회원수</td><td></td><td>지회수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⑩아시아/국제연맹과의
관계</td><td rowspan="2">명칭</td><td></td><td rowspan="2">회원
가입
여부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「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정관」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인

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붙임서류
1. 단체 소개서(연혁, 종목설명, 활동개요, 조직 등)
2. 임원 명단(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)
3. 단체의 모든 규약
4.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
5.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
6. 회원종목단체의 선수 및 동호인 등록 현황 (스포츠클럽 포함)
7. 회원종목단체 가입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
8.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
9.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
10. 전년도 예·결산서 및 해당연도 예산서
11.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(IF) 및 아시아경기연맹(AF) 가입 관련 서류
12. 해당 단체의 중앙종목단체 현황 및 전국종목단체 등록현황 등에 관한 참고자료
13. 체육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및 현황 등</td></tr>
</table>

[별지 제2호 서식]

<table>
<tr><td>접수일</td><td></td><td colspan="5" rowspan="2">동체육회 가입 신청서</td></tr>
<tr><td>접수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신청인
(대표자)</td><td>①단체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②연락처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③주소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④성명
(한자)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⑤생년월일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⑥사무처 주소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⑦설립 연월일(총회일)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⑧설립목적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⑨회원현황</td><td>종목
단체</td><td colspan="2">총 개
(정회원 0개, 준회원 0개, 인정단체 0개)</td><td>회원
현황</td><td>0개 종목,
0명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⑩단체현황</td><td>임원
구성</td><td colspan="2">총 명
(회장 0명, 부회장 명,
이사 명, 감사 명)</td><td>직원
구성</td><td>총 명
(정규직 명,
계약직 명)</td></tr>
<tr><td colspan="7">「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정관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인

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7">붙임서류
1. 단체 소개서(연혁, 조직현황, 활동개요 등)
2. 임원 명단(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)
3. 단체의 모든 규약
4.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허가증
5. 법인 등기부등본
6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7. 법인설립 총회 회의록
8. 체육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및 현황 등</td></tr>
</table>

[별지 제3호 서식]

<table>
<tr><td>접수일</td><td></td><td colspan="3" rowspan="2">회원종목단체 승격 신청서</td></tr>
<tr><td>접수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신청인
(대표자)</td><td>①단체명</td><td></td><td>②연락처</td><td></td></tr>
<tr><td>③주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④설립일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⑤승격 필요성
(500자 내)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⑥
승격요건</td><td col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2">검토 결과
*해당하지 않을 경우 “해당없음”으로 표기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클럽수
(회원종목단체 등급 구분)</td><td colspan="2">0개 클럽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아시아/국제연맹과의 관계</td><td colspan="2">명칭:
가입여부: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현 등급 승인 후 2년 경과</td><td colspan="2">등 급:
승인일: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가입한 아시아 및 국제연맹 명칭</td><td colspan="2">아시아:
국제: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종목단체규정 제40조의2에 따른 직전 평가등급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위와 같이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승격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인

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붙임서류
1. 임원 명단
2. 단체의 모든 규약
3. 회원종목단체의 선수 및 동호인 등록 현황(스포츠클럽 포함)
4. 체육회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클럽 현황
5. 대회 개최 및 국제 대회 입상 실적
6.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 현황(2년에 1회 이상)
7. 체육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및 현황 등</td></tr>
</table>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약식)

■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경력 등 민감 정보 포함. 이하 동일)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 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■ 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■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유의사항
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

■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 「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

성 명	생년월일	서 명	
	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

■ 본인 동의

※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

개인정보	민감정보
■ 주민 조회자료(경찰청)	■ 범죄경력·수사·수배 조회자료(경찰청)

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